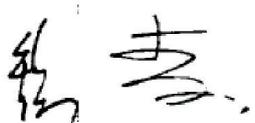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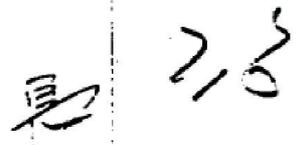


'92. 10.

# 大田駐車施設管理工團設立計劃(案)

| 課 長   | 局 長 | 副市長  | 市 長   |
|---|-----|--|---|
|  |     |  |  |

交通指導課長 

企劃管理室長 

交 通 企 劃 課

# 目 次

目 的

方 針

設 立 計 劃 (案)

1. 駐車場 管理 및 牽引事業 現況
2. 出資額 및 獨立採算性 檢討
3. 事業 範圍 및 委託 事業 內容
4. 組織 및 所要人力

向 後 推 進 事 項

※ 參考事項

- 目別 所要 豫算 算出內譯
- 根據法令 基本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시행령 제54조

(내무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개선지침” 공단설립지시)

## 大田 駐車施設 管理公團 設立 計劃 (案)

날로 急增하는 車輛으로 無秩序한 交通秩序를 效率的이고 體系的으로 管理 運營하기 위한 駐車施設 管理公團을 設立 運營함으로써.

- 都心地域의 極甚한 駐車難 및 交通滯症 緩和
- 駐車管理의 專門化로 經營 能率을 向上하고 駐車施設 持續的 擴充
- 迅速하고 公正한 業務遂行으로 市民의 秩序意識 涵養

※法的根據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시행령 제54조 및 대전직할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92. 9.13 내무부 “공영주차장관리운영개선지침” 공단 설립지시)

### 目 的

- 駐車施設 擴充 및 運營管理의 效率化, 專門化
- 駐車秩序 確立, 駐車施設 利用 極大化
- 親切奉仕, 快適한 環境繼持로 利用市民 서비스 質 向上

### 方 針

- 推進期間 : '92. 10 ~ '92. 7월말까지 設立 完了
- 組織 및 所要人力은 最小한 精稅人員 確程 運營
- 駐車管理 運營의 內實化, 專門化
- 地方收入의 增大로 駐車施設의 持續的 擴充

□ 設 立 計 劃(案)

1. 駐車場 管理 및 牽引事業 現況

○ 駐車場 現況 : 總 1,684個所 37,294面 (路上 163個所 4,159面, 路外 88個所 4,633面, 附設 1,433個所 28,502面)

- 公營駐車場 現況

| 區 分 | 計   |       | 有 料 |       | 無 料 |       |
|-----|-----|-------|-----|-------|-----|-------|
|     | 個所數 | 面 數   | 個所數 | 面 數   | 個所數 | 面 數   |
| 計   | 210 | 6,614 | 24  | 1,309 | 186 | 5,305 |
| 路 上 | 163 | 4,159 | 22  | 889   | 141 | 3,270 |
| 路 外 | 47  | 2,455 | 2   | 420   | 45  | 2,035 |

- 公營駐車場 委託管理 現況

| 區 分 | 個 所 | 面 數   | 委 託 管 理 團 體                                  |
|-----|-----|-------|--|
| 計   | 24  | 1,309 | . 대한상이군경회 13개소(464)                          |
| 路 上 | 22  | 889   | . 대전종합개발공사 9개소(756)                          |
| 路 外 | 2   | 420   | . 경 남 주 차 장 1개소(47)<br>. 대 사 동 노 인 회 1개소(42) |

※ '91년도 收入金額 203,686천원 → '92년도 契約金額 496,458천원 (증 244%)  
'91년도 收入金의 50% 收入 → '92년도 道路 및 河川점용료로 週用 契約締結

○ 不法 駐.停車 牽引事業

- 事業所 現況

| 車 庫 地                | 裝 備 保 有          | 人 員                              |
|----------------------|------------------|----------------------------------|
| 중구 문화1동 311-14(500평) | 견인차 8대<br>무전기 9대 | 운전원 (기능10등급) 16명,<br>보조원 (일용) 9명 |

※ '91년 牽引實績 : 8,799건(月平均 733건), 總收入액 : 156,425천원  
'92년 牽引料 收入豫想額 : 178,565천원

2. 出資額 및 獨立採算性 檢討

○ 出資額

· 現金 : 938,519천원('93년도 예산 편성)

· 現物 : 102,700천원(견인차 8대 95,500천원. 무전기 9대 7,200천원)

○ 獨立採算性 檢討

(單位 : 千원)

| 現 在  | 公 團 設 立 時   |
|--|---|
| <p>○ 收入 豫想額 : 年 700,130</p> <p>○ 所要 豫算 : 年 938,519</p> <p>○ 利 益 金 : 年 △ 238,389</p>  | <p>○ 收入 豫想額 : 年 1,114,130</p> <p>○ 所要 豫算 : 年 938,519</p> <p>○ 利 益 金 : 年 175,611</p>   |
| <p>- '92 收入 豫想額 算出內譯 -</p> <p>○ 收 入 金 : 700,130</p> <p>┌ 駐車料 收入 : 521,565</p> <p>└ 牽引料 收入 : 178,565</p> <p>- 所要 豫算額 産出內譯-</p> <p>○ 支 出 額 : 938,519</p> <p>┌ 人件費 : 792,887</p> <p>┌ 駐車場 運營費 : 125,220</p> <p>┌ 牽引管理所 運營費 : 20,412</p> <p>※ 目別 所要 豫算額 : 別添</p> | <p>※ 收入 豫想額 (1,114,130) = 現收入 豫想額 (700,130) + 收入 增大事業 (414,000)</p> <p>□ 事業 擴大 推進 : 414,000</p> <p>○ 駐車料 收入 : 354,000</p> <p>┌ 駐車管理 運營改善으로 現收入 金의 20% 이상 收入 增大 : 약 104,000</p> <p>┌ 現 路上 無料 駐車場 有料化 推進 : 약 150,000</p> <p>- 118個所 駐車施設 2,397면 中 有料化 可能地域 指定 擴大</p> <p>- 이면도로 駐車施設 擴充 (400면)</p> <p>- '92년도 河床 駐車場 建設 (인창교-보문교) : 100,000</p> <p>○ 牽引料 收入 : 60,000</p> <p>現 1일 1대당 牽引車輛 5대 → 3대 이상</p> |

3. 事業範圍 및 委託事業 內容

○ 事業範圍

- 公營駐車場 管理 事業
- 不法駐停車 牽引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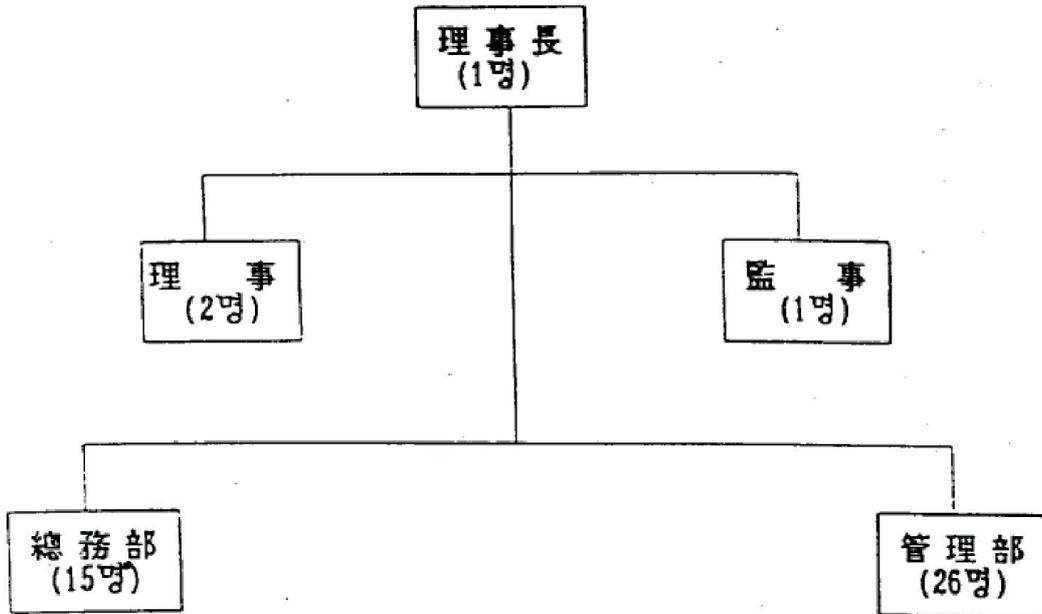
※駐車場 設置 및 不法駐停車 團束 業務：當該 區廳에서 實施

○ 委託事業 內容

| 項 目  | 推 進 方 針   |
|--|---|
| ○ 公營駐車場 管理 運營<br>- 駐車料金 徵收<br>- 駐車 施設物 維持 管理 | ○ 駐車料金 徵收 全額 大田直轄市<br>都市交通事業 特別會計 歲入<br>○ 駐車施設 管理公園 運營 補助費  |
| ○ 駐車管理公園 豫算 編成 運營                            | ○ 自體豫算編成 市長 承認後 執行  |
| ○ 駐車管理公園 機構 및 人力                             | ○ 事前 市長 承認後 確保 管理   |
| ○ 不法 駐.停車 車輛 牽引管理                            | ○ 不法 駐.停車 牽引 保管 管理<br>○ 牽引 手數料 徵收 全額 大田直轄市<br>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 歲入 |

4. 組織 및 所要人力

○ 組 織



- 理事長：常任
- 理事：財務局長，交通觀光局長（當然職，非常任）
- 監事：監查室長（當然職，非常任）

※ 他市の組織 및 委託事業 節園

- 서울특별시：4실, 3부 12과 3사업소  
(공영주차장 관리, 견인자동차관리,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어린이 대공원, 장문장 관리, 석촌호수관리 등)
- 부산직할시：2부 2과  
(공영주차장관리, 견인자동차관리)
- 인천직할시：2부  
(공영주차장관리, 견인자동차관리)

○ 所要人力

- 職 級 別

| 區 分 | 計  | 任 員 | 職 級 別 待 遇 |      |      |      |        | 고 용 인 |
|-----|----|-----|-----------|------|------|------|--------|-------|
|     |    |     | 小計        | 5급대우 | 6급대우 | 7급대우 | 기능10등급 |       |
| 總 計 | 79 | 4   | 38        | 2    | 2    | 2    | 32     | 37    |
| 總務部 | 15 | 3   | 12        | 1    | 1    | 1    | 9      |       |
| 管理部 | 63 |     | 26        | 1    | 1    | 1    | 23     | 37    |
| 監 事 | 1  | 1   |           |      |      |      |        |       |

- 機 能 織

| 區 分 | 計  | 運 轉 員 |     | 廳舍警備員   | 駐 車 場 | 타자원 | 備 考 |
|-----|----|-------|-----|---------|-------|-----|-----|
|     |    | 牽引車   | 집 차 | (牽引管理所) | 管 理 員 |     |     |
| 計   | 32 | 16    | 1   | 7       | 7     | 1   |     |
| 總務部 | 9  |       | 1   | 7       |       | 1   |     |
| 管理部 | 23 | 16    |     |         | 7     |     |     |

※ 現場 管理要員는 現管理 要員 優先 任用配置.(37名)

- 牽引車 運轉員 16名 : 牽引車 隔日制 運行
- 집차 運轉員 1名 : 巡察車輛 1臺 確保 運行
- 駐車團束員은 區廳長이 任命하여 駐車管理公團에 勤務 指定
  - ┌ 不法 駐. 停車 過怠料 收入은 區豫算 歲入 措置
  - └ 牽引 手數料 收入은 市 豫算 歲入 措置

※ 他市 定員 現況

- 서울특별시 : 960명(임직원 159명, 기능직 801명)
- 부산직할시 : 267명(임직원 20명, 기능직 247명)
- 인천직할시 : 93명(임직원 10명, 기능직 32명, 일용직 51명)

○ 業務分擔 內容

| 區 分   | 業 務 內 容  | 備 考 |
|-------|--|-----|
| 總 務 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組織 및 定員管理</li> <li>○ 審査分析 및 經營分析</li> <li>○ 諸般 規定의 制定 및 改正 등 法務에 관한 事項</li> <li>○ 文書 및 職員管理</li> <li>○ 物品 및 財産管理</li> <li>○ 服務, 教育, 報酬 및 厚生管理</li> <li>○ 豫算編成 및 執行決算</li> <li>○ 非常計劃 樹立 및 施行</li> <li>○ 安全事故 豫防 및 對策</li> <li>○ 保安管理</li> <li>○ 기타 關聯 業務</li> </ul> |     |
| 管 理 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駐車場 料金 徵收</li> <li>○ 管理要員 配置 및 服務 指導 監督</li> <li>○ 駐車券 管理</li> <li>○ 收入金 分析 및 收入增大 方案 講究</li> <li>○ 駐車料金 脫漏防止 對策 講究</li> <li>○ 車積 照會 및 加算金 告知 徵收</li> <li>○ 不法 駐, 停車 車輛 牽引業務</li> <li>○ 牽引 車輛의 保管 管理</li> <li>○ 牽引 手數料의 附課徵收</li> <li>○ 駐車施設의 補修 維持 管理</li> </ul>   |     |

## □ 向後推進事項

| 推 進 日 程  | 推 進 內 容                    | 處 理 部 署        | 備 考         |
|----------|----------------------------|----------------|-------------|
| '92. 9월  | 設立 計劃(案) 作成                | 交通企劃課          | 豫算擔當官<br>通報 |
| '92. 11월 | 設立 基本計劃(案) 確定              | 豫算擔當官          |             |
| '92. 12월 | 條例(案) 作成<br>條例 承認 申請       | 豫算擔當官          |             |
| '92. 12월 | 條例 公布                      | 法務擔當官          |             |
| '92. 1월  | 公園 定款(案) 作成<br>報酬 規定(案) 作成 | 豫算擔當官<br>豫算擔當官 |             |
| '93. 2월  | 公園 設立認可 承認 申請              | 豫算擔當官          |             |
| '93. 3월  | 理事長 選任<br>理事長 選任 承認 申請     | 總 務 課<br>豫算擔當官 |             |
| '93. 4월  | 條例 施行規則(案) 作成              | 豫算擔當官          |             |
| '93. 5월  | 報酬規定 承認 및 職員 發令            | 豫算擔當官<br>總 務 課 |             |
| '93. 6월  | 駐車業務 引繼 引受                 | 交通企劃課          |             |
| '93. 6월  | 公園 開設 準備                   | 豫算擔當官          |             |
| '93. 7월  | 公園 發足 業務 開始                | 豫算擔當官          |             |

별첨1

##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단위 : 천원)

|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
| 총 예산액        | 938,519 |   |
| 101<br>급여    | 186,0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급 692,500원 × 1인 × 12월 = 8,310,000</li> <li>○ 5급 683,000원 × 2인 × 12월 = 16,392,000</li> <li>○ 6급 612,500원 × 2인 × 12월 = 14,700,000</li> <li>○ 7급 470,500원 × 2인 × 12월 = 11,292,000</li> <li>○ 기능10등급 312,500원 × 32인 × 12월 = 120,000,000</li> <li>○ 처우개선비 170,694,000원 × 9/100 = 15,362,460</li> </ul>   |
| 102<br>상여금   | 82,5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말수당 170,694,000원 × 4/12 = 56,898,000</li> <li>○ 정근수당 170,694,000원 × 1.8/12 = 25,604,100</li> </ul>  |
| 105<br>정액수당  | 81,7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수당 15,000원 × 39인 × 2.35 × 12월 = 16,497,000</li> <li>○ 자녀학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 학교 81,500원 × 39인 × 0.19 × 4회 = 2,415,660</li> <li>° 고등학교 139,000원 × 39인 × 0.16 × 4회 = 3,469,440</li> </ul> </li> <li>○ 직무수당 170,694,000원 × 30/100 = 51,208,200</li> <li>○ 장기근속수당 20년 이상 80,000 × 5인 × 12월 = 4,800,000</li> <li>○ 기타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외근무수당 1,579원 × 7인 × 25시간 × 12월 = 3,315,900</li> </ul> </li> </ul> |
| 108<br>일용인부일 | 321,0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요금 징수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금 20,000원 × 37인 × 300원 = 222,000,000</li> <li>° 상여금 222,000,000 × 4/12 = 74,000,000</li> <li>° 시간외근무수당 1,141원 × 37인 × 10시간 × 12월 = 5,065,040</li> <li>° 월차유급휴가수당 20,000 × 37인 × 12월 = 8,880,000</li> <li>° 연차유급휴가수당 20,000 × 37인 × 15일 = 11,100,000</li> </ul> </li> </ul>  |

(단위 : 천원)

|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
| 221 수용비및<br>수수료 | 21,000  | ○ 주차권 인쇄비 200원×100,000매 = 20,000,000<br>○ 각종 대장 인쇄 - 10,000,000   |
| 228<br>복리후생비    | 110,537 | ○ 경역급식비 50,000×76인×12월 = 45,600,000<br>○ 가계보조금 70,000×39인×12월 = 32,760,000<br>○ 호도휴가비 50,000×39인 = 1,950,000<br>○ 체력단련비 170,694,000×1.5/12 = 21,336,750<br>○ 연가보상비 170,694,000×1/12×15/24 = 8,890,312 |
| 232<br>정보비      | 7,320   | ○ 사 장<br>° 경 역 200,000원×1인×12월 = 2,400,000<br>° 직주수행 110,000원×1인×12월 = 1,320,000<br>○ 5 급 150,000원×2인×12월 = 3,600,000   |
| 233 기관운영<br>판공비 | 3,720   | ○ 사 장 200,000원×1인×12월 = 2,400,000<br>○ 5 급 55,000원×2인×12월 = 1,320,000   |
| 245<br>계생공과금    | 4,063   | ○ 자동차 보험<br>° 책 임 96,900원×9대 = 872,100<br>° 종 합 310,600원×9대 = 2,795,400   |
| 261<br>차량비      | 31,500  | ○ 불법주정차 견인차량<br>3,500,000원×9대 = 31,500,000  |
| 264 시설장비<br>유지비 | 30,000  | ○ 주차시설 보수<br>° 주차구획선 15,020,000<br>° 시설유지비 10,000,000<br>° 건물수선 5,000,000   |
| 265<br>연료비      | 2,091   | ○ 당직실 (온수보일러)<br>° 경유 1,226원×8시간×150일 = 1,471,200<br>○ 난로 (2대분) 530,000   |

(단위 : 천원)

|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
| 821<br>관서당경비 | 20,8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양비 7,986,000</li> <li>○ 국내여비 3,000,000</li> <li>○ 자산취득비 500,000</li> <li>○ 공공요금 1,200,000</li> <li>○ 특별관공비 1,200,000</li> <li>○ 수송비 및 수수료 7,000,000</li> </ul>  |
| 106<br>상용피복비 | 6,7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료 징수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복 83,860원 × 37인 = 3,102,820</li> <li>° 우의 3,580원 × 37인 = 132,460</li> <li>° 단화 18,000원 × 37인 × 2회 = 1,332,000</li> <li>° 방한복 50,000원 × 37인 = 1,850,000</li> <li>° 작업모 3,000원 × 37인 = 111,000</li> <li>° 방한모 6,000원 × 37인 = 222,000</li> </ul> </li> </ul>   |
| 411<br>자산취득비 | 14,4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타자기 1,200,000</li> <li>○ 워크스테이션(프린터 포함) 3,500,000</li> <li>○ 목사기 3,500,000</li> <li>○ 책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종 110,000 × 1개 = 110,000</li> <li>° 4종 70,000 × 10개 = 700,000</li> </ul> </li> <li>○ 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A 52,000 × 1개 = 52,000</li> <li>° 3B 32,000 × 10개 = 320,000</li> </ul> </li> <li>○ 난방용 난로 구입 300,000원 × 2대 = 600,000</li> <li>○ 청사진 카메라 500,000원 × 1대 = 500,000</li> <li>○ 응집세트 1,750,000 / 2세트 = 3,500,000</li> <li>○ 선풍기 150,000원 / 3대 = 450,000</li> </ul> |
| 251<br>임차료   | 1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 임대 25경 15,000,000</li> </ul>  |

第10編 地方制度 第5章 地方公企業 地方公企業法

第70條 (給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基準) 公社は 그 任員과 職員에 대한 給與 및 退職手當의 支給基準을 정하여 設立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設立團體의 長은 이의 認可機關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本條新設 80-1-4)

第71條 (代行業業의 費用 負擔) ①公社は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 代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負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80-1-4)

第72條 (元受金) 公社は 그가 遺棄하는 財産을 分讓받거나 贈與을 이용하려는 者 또는 用役을 제공받으려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金の 全部 또는 一部를 이의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80-1-4)

第4節 監 査

第73條 (監査) 認可機關과 設立團體의 長은 公社の 業務를 監査한다.

(本條新設 80-1-4)

第74條 (보고 및 監査等) 認可機關과 設立團體의 長은 公社の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事項을 監査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80-1-4)

第5節 備 則

第75條 (商法の 準用) 公단중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團에 準하여는 이 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商法 第292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80-1-4)

第4章 地方公團

第76條 (設立·運營) ①서울特別市·釜山市·道와 人口 50萬이상의 市(이하 이 章에서 "設立團體"라 한다)는 第2條의 事業을 效率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다만, 人口 50만未滿의 地方自治團體도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公團을 設

第10編 地方制度 第5章 地方公企業 地方公企業法

할 수 있다.

②公園의 設立·運轉에 關하여는 第49條 내지 第52條·第53條第1項·第56條 내지 第66條·第69條 내지 第7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58條·第59條 및 第62條중 “社長”은 “理事長”으로, “副社長”은 “副理事長”으로 본다.

(本條新設 80·1·4)

第77條 (費用負擔) 公團은 設立團體의 財의 承認을 얻어 그 事業에 다른 公團을 助 하거나 事業에 필요한 費用을 負擔하지 할 수 있다.

(本條新設 80·1·4)

第78條 (權限의 委託) 設立團體의 長은 條例의 規定을 外에 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公團의 設立目的의 遂行을 爲하여 필요한 權限의 一部를 公團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本條新設 80·1·4)

第5章 補則

第79條 (國庫支授) 國家는 地方公企業(公團 및 公園을 포함한다)의 國庫한 經營을 爲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設立團體에 對하여 設立團體가 出資할 資本을 外에 필요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本條新設 80·1·4)

第80條 (施行令) 이 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80·1·4)

第6章 罰則

第81條 (罰則) 公團 또는 公團의 長(理事長을 指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規定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100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5條·第66條第2項(第76條第1項에서 適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第73條/第76條第2項에서 適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檢照 또는 設立團體의 長의 職務를 爲하는 爲한에 違反한 때

(本條新設 80·1·4)

第82條 (同罰) 相當한 理由없이 第74條·第75條第2項에서 適用하는 경우를 포함

第10條 地方制度 第5章 地方公企業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본조신설 80·5·8]

제53조의2 (선수금)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88·12·31]

제53조의3 (지도 및 권고) 공사의 인가기관은 공사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설립단체의 장 또는 공사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88·12·31]

제54조 (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제53조·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개정 88·12·31>

[본조신설 80·5·8]

제55조 (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5·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으로서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의 전회계연도의 결산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출납정리에 따르는 수익과 결손은 당해연도의 자본증감으로 한다.

부 칙 <8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 칙 <80·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 4 조 생략

(추 18)

제3편 기획관리 대전직할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대전직할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 [ 1990. 6. 19 ]  
[조례 제2021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021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편 기획관리 대전직할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 사업명                       | 구분 | 기 준   |                                       |
|---------------------------|----|-------|---------------------------------------|
|                           |    | 직원수   | 사 업 규 모                               |
| 시장사업<br>(농수산물도매시장포함)      |    | 5인이상  |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
| 도축장사업                     |    | 5인이상  | 1일평균도축수 소1두, 돼지50두 이상                 |
|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br>토지개발사업   |    | 10인이상 |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 통운(도선)사업                  |    | 10인이상 | 브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브유선박 톤수 100톤이상        |
| 증기관리 사업                   |    | 10인이상 | 브유증기 10대이상                            |
| 관광지 개발사업                  |    | 10인이상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 계량기 점검사업                  |    | 5인이상  | 브유기준 계량기 15종 이상                       |
| 체육시설 사업                   |    | 10인이상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br>포함)     |    | 10인이상 |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
| 공원조성사업                    |    | 10인이상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
| 공유수면매립사업                  |    | 10인이상 |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br>사업      |    | 10인이상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 건설자재생산사업<br>(석산개발포함)      |    | 5인이상  | 1일평균생산능력 1천평방미터 이상                    |
|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br>(창고시설 포함) |    | 5인이상  |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
| 주차장사업                     |    | 5인이상  |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
| 통합공과금사업                   |    | 10인이상 |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되고<br>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
| 지역개발기금사업                  |    | 3인이상  | 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

## 公營有料駐車場 委託管理 現況

○ 委託管理 現況

(單位：個所，臺)

| 區分<br>受託業體別  | 計  |       | 路上駐車場 |     |     |    | 河床駐車場 |     |     |    |
|--------------|----|-------|-------|-----|-----|----|-------|-----|-----|----|
|              | 個所 | 面數    | 1級地   |     | 2級地 |    | 1級地   |     | 2級地 |    |
|              |    |       | 個所    | 面數  | 個所  | 面數 | 個所    | 面數  | 個所  | 面數 |
| 計            | 24 | 1,309 | 21    | 847 | 1   | 42 | 2     | 420 |     |    |
| 대한상이<br>군경회  | 13 | 464   | 13    | 464 |     |    |       |     |     |    |
| 대전종합<br>개발공사 | 9  | 756   | 7     | 336 |     |    | 2     | 420 |     |    |
| 경남주차장        | 1  | 47    | 1     | 47  |     |    |       |     |     |    |
| 대사동노인회       | 1  | 42    |       |     | 1   | 42 |       |     |     |    |

○ 駐車料 收入內譯

| 區分       | '92年度<br>契約金額 | '92年度<br>收入金額 | 對 比     |         | 備 考   |
|----------|---------------|---------------|---------|---------|-------|
|          |               |               | 91收入金額  | 增減內譯    |       |
| 計        | 496,458       | 491,668       | 203,686 | 287,982 | 增241% |
| 대한상이군경회  | 230,707       | 227,715       | 100,110 | 127,605 |       |
| 대전종합개발공사 | 232,863       | 231,065       | 88,317  | 142,748 |       |
| 경남주차장    | 29,343        | 29,343        | 13,222  | 16,121  |       |
| 대사동 노인회  | 3,545         | 3,545         | 2,037   | 1,508   |       |

※ 路上有料駐車場 區間閉鎖로 未收入金 發生 - 4,790천원

· 大田綜合開發公社 1,798천원

- 大田女中 下水道 整備：'92.3.13~4.24(43일)

- 大田女中 담장개축공사：'92.6.1~6.30(30일)

· 대전상이군경회 2,992천원

중구청 별관 증축공사：'92.7.10~9.26(78일)